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타 사항을 신설해 보훈단체 지원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기타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호).
- 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 현행 : 만65세 미만 월 3만원, 만65세 이상 월 6만원,
만80세 이상 월 10만원
 - 개정 : 만75세 미만 8만원, 만75세 이상 12만원

다. 오산시에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 신청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제5항)

라.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함(안 부칙시행일).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8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8-352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발의의원 : 이상복, 장인수 의원

찬성의원 : 김명철,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타 사항을 신설해 보훈단체 지원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기타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호).
- 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 현행 : 만65세 미만 월 3만원, 만65세 이상 월 6만원,
만80세 이상 월 10만원
 - 개정 : 만75세 미만 8만원, 만75세 이상 12만원
- 다. 오산시에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 신청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제5항)
- 라.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함(안 부칙시행일).

□ 참고사항

- 예산수반사항 : 별첨1(비용추계서)
- 관계법령발취서 : 별첨2(현행 조례)
- 기타 참고사항 : 별첨3(경기도 시·군별 보훈수당 지원 현황)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업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훈수당: 만75세 미만 8만원, 만75세 이상 12만원(별지 제1호서식)

- ⑤ 시장은 관할 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u></p>
<p>제8조의2(보훈수당 등 지급) ①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u>1. 보훈수당: 만65세 미만 월 3만원, 만65세 이상 월 6만원, 만80세 이상 월 10만원(별지 제1호서식)</u></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제8조의2(보훈수당 등 지급) ① ----- ----- ----- ----- ----- ----- -----.</p> <p><u>1. 보훈수당: 만75세 미만 8만원, 만75세 이상 12만원(별지 제1호서식)</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시장은 관할 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u></p>

【별첨1】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며 오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지원액 : 매월 만75세 미만은 8만원, 만75세 이상은 12만원 지급
- 추계기간 : 2021년부터 수당 지급 사유가 없어지는 날까지 지속적인 재정소요 존재함.
-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산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크게 감소 또는 증가하지 않고 2020년 현재 인원(1,56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현재 인원으로 추계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명/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지급대상인원	1,560	1,560	1,560	1,560	1,560	
지 급 액	1,771,200	1,771,200	1,771,200	1,771,200	1,771,200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산출기초)

(단위: 명/천원)

2020년도 (현행)				2021년도 (개정)			
구분	인원	지급액	연간비용	구분	인원	지급액	연간비용
만65세미만	417	30	150,120	만75세미만	990	80	950,400
만65세이상	731	60	526,320				
만80세이상	403	100	483,600	만75세이상	570	120	820,800
합 계	1,551	-	1,160,040	합계	1,560	-	1,771,200

☞ 현행 대비 증가하는 예산은 매년 611,160천원으로 추정됨.

※ 자료제공 :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라. 채용조달방안 : 2021년도 오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오산시의회 전문위원(박용수)

[별첨2]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 946호
개정	2009년 12월 16일	조례 제1063호
일부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12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78호
일부개정	2016년 11월 14일	조례 제1531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 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이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3.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4.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6.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 선양 시설 건립과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보훈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3.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보훈수당 등 지급) ①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

금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훈수당: 만65세 미만 월 3만원, 만65세 이상 월 6만원, 만80세 이상 월 10만원(별지 제1호서식)
2. 사망위로금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별지 제2호서식)
- ② 제1항제2호의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며, 지급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다.
- ③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의3(지급중지) ① 보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제8조의4(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할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환수사유 발생 시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

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 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의5(신청사항 변경) 제8조의2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2.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 12. 16>

부칙 <2009. 12. 16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4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3]

참 고 자 료

○ 경기도 시·군별 보훈수당 지원현황(2020.7.1.기준)

(단위 : 천원, 명)

시군명	기준		지원금액 (월지급)	대상	대상 인원	예산	비고
	구분	연령					
1 수원시	보훈수당	전 연령	50	참전유공자 제외	3,300	6,168,000	
	참전수당	전 연령	70	참전유공자	4,700		
2 용인시	보훈수당	65세 이상	70	참전유공자 포함	9,130	9,349,200	•연령제한 •중복지급 (참전+보훈)
	참전수당	80세 이상	70	참전유공자	2,000		
3 성남시	보훈수당	65세 이상	70	국가보훈대상자	4,700	7,908,000	•연령제한
		80세 이상	100		3,300		
4 부천시	보훈수당	65세 이상	70	국가보훈대상자	7,440	5,208,000	•연령제한
5 안산시	보훈수당	전 연령	50	참전유공자 제외	1,050	630,000	
	참전수당	전 연령	70	참전유공자	2,250	1,890,000	
6 화성시	보훈수당	80세 미만	80	국가보훈대상자	5,700	5,880,000	
		80세 이상	100				
7 안양시	보훈수당	전 연령	70	국가보훈대상자	6,000	5,040,000	•분기별 지급
8 평택시	보훈수당	전 연령	50	참전유공자 포함	4,350	2,610,000	•중복지급 (참전+보훈)
	참전수당	전 연령	40	참전유공자	2,200	1,320,000	
9 시흥시	보훈수당	80세 미만	60	참전유공자 제외	1,472	2,000,000	
		80세 이상	100				
	참전수당	80세 미만	60	참전유공자	1,536		
		80세 이상	100				

시군명	기준		지원금액 (월지급)	대상	대상 인원	예산	비고
	구분	연령					
10 김포시	보훈수당	전 연령	50	국가보훈대상자	4,000	2,400,000	•연령제한 •중복지급 (참전+보훈)
	참전수당	80세 이상	50	참전유공자	1,000	600,000	
11 광명시	보훈수당	65세 미만	30	참전유공자 포함	3,000	1,596,000	•중복지급 (참전+보훈)
		65세 이상	50	참전유공자 포함			
	참전수당	전 연령	20	참전유공자	500	120,000	
12 광주시	보훈수당	전 연령	100	참전유공자 제외	1,900	2,280,000	•분기별 지급
	참전수당	전 연령	100	참전유공자	1,550	1,860,000	
13 군포시	보훈수당	전 연령	70	국가보훈대상자	3,185	3,822,000	
14 이천시	보훈수당	전 연령	50	참전유공자 제외	900	540,000	
	참전수당	80세 이상	100	참전유공자	800	960,000	
15 하남시	보훈수당	전 연령	70	국가보훈대상자	3,500	2,940,000	
16 안성시	보훈수당	60세 이상 80세 미만	50	참전유공자 포함	1,650	1,146,000	•연령제한 •중복지급 (참전+보훈)
		80세 이상	70				
	참전수당	60세 이상	20	참전유공자	1,100	264,000	
17 의왕시	보훈수당	전 연령	80	참전유공자 제외	874	1,050,000	
	참전수당	전 연령	100	참전유공자	850	2,280,000	
18 여주시	보훈수당	전 연령	70	참전유공자 포함	1,550	1,302,000	•중복지급 (참전+보훈)
	참전수당	80세 이상	50	참전유공자	420	252,000	

시군명	기준		지원금액 (월지급)	대상	대상 인원	예산	비고
	구분	연령					
19 양평군	보훈수당	전 연령	70	참전유공자 제외	800	672,000	
	참전수당	90세 미만	100	참전유공자	1,150	1,470,000	
		90세 이상	150				
20 과천시	보훈수당	전 연령	70	국가보훈대상자	900	756,000	
21 고양시	보훈수당	80세 미만	50	국가보훈대상자	104,400	5,820,000	
		80세 이상	70				
22 남양주시	보훈수당	전 연령	70	참전유공자 포함	5,600	4,700,000	•중복지급 (참전+보훈)
	참전수당	전 연령	30	참전유공자	1,120	403,000	
23 의정부시	보훈수당	65세 이상	70	국가보훈대상자	4,500	3,780,000	•연령제한
24 파주시	보훈수당	65세 이상	70	국가보훈대상자	4,100	3,444,000	•연령제한
25 양주시	보훈수당	65세 이상	70	국가보훈대상자	2,137	1,795,080	•연령제한
26 구리시	보훈수당	전 연령	100	국가보훈대상자	2,020	2,484,000	•짝수달만 지급
27 포천시	보훈수당	전 연령	100	참전유공자 제외	800	1,320,000	
	참전수당	전 연령	100	참전유공자	1,100	960,000	
28 동두천시	보훈수당	65세 이상	60	국가보훈대상자	1,200	864,000	•분기별 지급
29 가평군	보훈수당	전 연령	100	참전유공자 제외	460	600,000	
	참전수당	전 연령	100	참전유공자	610	804,000	
30 연천군	보훈수당	65세 이상	100	국가보훈대상자	800	960,000	